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동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2. ~ 8. 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07호
----------	--------

발의연월일 : 2022. 8. 10.

이영란 의원, 김영진 의원

서선란 의원, 오행숙 의원

발의자 : 양동진 의원, 장경순 의원

최병배 의원, 정홍준 의원

김미연 의원, 정광현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 순천시 의무부담에 관한 협약 체결 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제3조, 제9조)
- 협약체결 시 절차 구체화 (안 제4조)
-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내용 구체화(안 제5조 ~ 6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27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협약체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영란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순천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예산”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 ----- 제142조----- -----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	제3조(적용범위) ① -----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용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4조(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 체결 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협약체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의안형식)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 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내용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사후관리) -----

법 제51조제1항-----
-----.

1. ~ 4.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 제55조(서류제출요구)** ①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국·소·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4급이상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위촉관련분야 회의 때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시행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4. 지방행정조정,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1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8.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9. 공무원 및 시민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정광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08호
----------	--------

발의연월일 : 2022. 8. 10.

정광현 의원, 이세은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서선란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발의자 :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태훈 의원, 이향기 의원
유승현 의원, 강형구 의원
최병배 의원, 이영란 의원
최현아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
(안 제3조)

나. 적용범위, 예방계획,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1) 범위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2) 대상

-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다. 예방 및 지원사업 (안 제8조)

-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 4) 방문간호서비스
-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 10) 일자리 알선
-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 12) 그 밖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예산상황 : 불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
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각 호의 사업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4.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업에 대한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1
억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정광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10-31	
2	고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02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3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12-31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4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1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21-11-05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6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03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7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4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8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11	경제복지국 노인장애인과
9	부여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2020-06-30	
10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2020-05-11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11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20-04-13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3-12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13	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1-07	자치혁신국 주민행복과
14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4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15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	복지국 복지정책과
16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12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17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09	생활복지친화국 복지지원과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28	복지국 복지정책과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04-22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0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03-07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21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2019-02-12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22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1-08	희망복지국 고령정책과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8-07-04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2017-08-09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25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21-02-19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6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20-03-30	복지국 복지정책과
27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2020-04-17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2020-03-27	공동체복지국 복지정책과
29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2019-03-12	복지국 복지정책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0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 발전의 효율성 제고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음으로써 간결하고 명확한 법령문으로 순화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제1조)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 기존) 「발명진흥법」 “제15조 4항” → 변경) ~ “제10조 및 제15조”
 - (제12조) 특허권 등록의 근거법령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 해석 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조문 등 정비
 - (제1조, 제2조) 행위 이행자의 명확화
 - 기존)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 변경) “~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 기존)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 변경) “직무발명이란 순천시 소속(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 (제10조) 이중부정 및 복문의 모호한 주어 서술어 관계 수정

- 기존) “발명자는 시장이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 변경)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가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4. 조례안 : 별첨

5. 관련법령 : 발명진흥법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2022. 7. 20.) 결과 : 의견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3.(가족보육과-1563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순천시 공고 제2022-162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을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중 “이로 말미암은” 을 “이로 인한” 으로 하며,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를 “순천시의”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직무발명” 이라 함은” 을 “ “직무발명” 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으로 하고, “발명을” 을 “그 발명을” 로 하며, “업무” 를 “직무”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 를 “시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를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발명진흥법</u> 」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u>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발명진흥법</u> 」 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로 인한----- ----- <u>순천시의</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u>직무발명</u> "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u>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 <u>직무발명</u> "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 ----- ----- <u>그 발명을</u> --- ----- <u>직무</u> ----- -----.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u>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u>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 ----- <u>시장으로부터</u> <u>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u> <u>에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u> ----- -----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
자 명으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
명으로써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 명의로 특
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 시장은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1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후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지역 특성 반영

3.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 변경 및 자격 제한 조건 추가(안 제7조)
- 위원추천관리위원회 기능 수정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
- 주민자치회 구성 방식 변경(안 제9조)
- 효율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시간 개정(안 제9조)
- 해석이 모호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절차 규정 개정(안 제22조)
- 기타 해석이 모호한 조문 개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제29조

6. 관련 부서 의견 : 해당없음

7. 예산상황 : 연간 16,800천 원(비용추계서 첨부)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9.(가족보육과-1605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29.(기획예산실-84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순천시 공고2022-1613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을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하고, “주민 공론장” 을 “주민 공론의 장” 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격 요건의 확인 기준일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 시작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장의 대표자” 를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을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정 될” 을 “선정될”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 위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5.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6.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의 활동을 위해 자진 사퇴한 사람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 을 “주민자치회 위원” 이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주민자치회에서”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8조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9조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제8조제6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이하 “주민자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인원이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 미달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구성원 각 1인을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받은 사람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5인 이상의 사업장
3.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

제9조제3항부터 제5항(중전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같은 항 제2호(중전 제9조제6항, 제9조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중전 제9조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 인정 기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1. 신규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 최소 6시간 사전 이수

2. 연임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 최소 3시간 사전 이수

④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를 10명 이내(순위를 포함한다) 추천으로 정한다.

⑤ 읍·면·동장은 추천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⑨ 위원의 추천 방법 등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호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제4항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전체회의”를 “주민자치회의”로 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총회 참석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제3항(중전 제16조제2항) 중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를 “결정하며” 로 하고, “결정한다” 를 “의결한다” 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중전 제16조제2항제3호) 중 “다음년도” 를 “다음 연도”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 제1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립한다” 를 “수립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에 대한 편성안

제17조제1항제7호 중 “그 밖의”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폭 넓은” 을 “폭넓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제20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만료 된 위원” 을 “만료된 주민자치회 위원” 이라 한다.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은 제9조의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절차를 따르되, 한 번만 추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교

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7호의 경우 읍·면·동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읍·면·동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자치회로부터 해촉 요구를 받는 경우 해촉 요구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의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해촉 요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 발의
2.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자치회의 해촉 의결
3.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해촉 요구

④ 제2항에 따른 해촉 심의의 대상이 된 위원(주민자치회장 포함)은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관련 사항”을 “주민자치회가 관련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조례 개정 후 새로 위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례 개정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인 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라 추천 없이 연임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23. 1. 1.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해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천의 방법으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제9조제3항의 교육 인정 유효기간은 2022년 4분기 기본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주민총회”란 <u>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u> 4.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u> ----- ----- ----- 주민 공론의 장 -----.
제4조(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u>기타</u>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4조(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그 밖에</u>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u>주민자치회의</u>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u>사업장의 대표자</u>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제7조(위원의 자격) ① <u>주민자치회</u> 위원은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u>이 경우 자격 요건의 확인 기준일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 시작일로 한다.</u> 1. (현행과 같음) 2. ----- <u>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3. -----

현행	개정안
<u>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u>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3. (생략) 4. <u>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u> <신설> <신설> <신설> 제8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u>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u>	<u>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4. (현행과 같음) ② ----- ----- <u>선정될 -----.</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8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u> 5. <u>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u> 6. <u>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u> ③ <u>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의 활동을 위해 자진 사퇴한 사람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u> 제8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u>주민자치회 위원</u>----- -----

현행	개정안
해당 읍·면·동 내에 위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1. 읍·면·동장 추천 : 2명 이내 (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 2. 관내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추천 : 2명 이내(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 3. <u>주민자치회에서</u> 추천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 ③ ~ ④ (생략) ⑤ (생략) 1.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 3. (생략) 4. <u>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u> ⑥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 발생 시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신설>	----- ----- -----. ② (현행과 같음) 1. 읍·면·동장 추천 : 2명 이내 2. 관내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추천 : 2명 이내 3. <u>주민자치회</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4. <u>제9조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u> ⑥ ----- ----- -----<u>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u> ⑦ <u>추천위원회 위원은 명예직</u>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이하 “주민자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인원이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 미달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구성원 각1인을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받은 사람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능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5인 이상의 사업장 3.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 ③ (현행 제9조제2항에서 이동)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 인정 기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신설>	1. 신규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 최소 6시간 사전 이수
<신설>	2. 연임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 최소 3시간 사전 이수
③ <u>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u>	④ (현행 제9조제3항에서 이동) <u>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10명 이내(순위를 포함한다) 추첨으로 정한다.</u>
④ <u>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u>	⑤ (현행 제9조제4항에서 이동) <u>읍·면·동장은 추첨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u>

현행	개정안
<u>하여야 한다.</u> ⑤ (생략) ⑥ <u>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u> 1. (생략) 2. <u>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u> ⑦ (생략) ⑧ <u>위원의 선정, 추천,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정한다.</u> ⑨ (생략)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u>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9조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9조제6항에서 이동) <u>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u> 1. (현행 제9조제6항제1호와 같음) 2. (현행 제9조제6항제2호에서 이동) <u>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u> ⑧ (현행 제9조제7항과 같음) ⑨ (현행 제9조제8항에서 이동) <u>위원의 추천 방법 등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단서 삭제)</u>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현행	개정안
① ~ ④ (생략) 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u>그 밖의</u> 분과회의, 분과장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전체회의</u>의 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호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u> 제1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그 밖에</u> ----- ----- -----<u>주민자치회의</u> ----- -----. 제16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주민총회 참석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u> 1. <u>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2. <u>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u> 3. <u>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u> 4. <u>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u>

현행	개정안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u>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u>,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u>결정한다</u>. 1. ~ 2. (생략) 3. 읍·면·동의 <u>다음년도</u> 마을계획안 4. <u>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u> 5. (생략) ③ ~ ⑧ (생략) 제17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 5. (생략) 6. <u>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u> 7. <u>그 밖의</u>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u>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u> ③ (현행 제16제조2항에서 이동)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u>결정하며</u>,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결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읍·면·동의 <u>다음 연도</u> 마을계획안 4. (삭제) 5.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 제16조제3항 ~ 제8항과 같음 제17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 ----- ----- <u>수립하여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6. <u>읍·면·동에 배정된 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에 대한 편성안</u> 7. <u>그 밖에</u> ----- ----- ② ----- ----- -----

현행	개정안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한다. ③ ~ ④ (생략)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생략) 1. <u>폭넓은</u>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생략) 3. <u>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u>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전임 <u>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u> ② <u>위원의 연임은 제9조의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절차를 따르되, 한번만 추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 기간이 <u>만료된 위원</u>의 경우 제9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 <u>제출하여야 한다.</u> ③ ~ ④(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1. <u>폭넓은</u> ----- ----- --- 2. (현행과 같음) 3. <u>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u>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u>주민자치회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전임 <u>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u> ② <u>주민자치회 위원</u>의 연임은 제9조의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절차를 따르되, 한 번만 추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 ----<u>만료된 주민자치회 위원</u>----- ----- ----- ----- ----- -----

현행	개정안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u>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1. <u>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u> 2. <u>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u> 3. (생략) 4. ~ 6. (생략) <신설> ② <u>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u> <신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7호의 경우 읍·면·동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u> 1. <u>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2. <u>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u> 3. (현행과 같음) 4. ~ 6. (삭제) 7. <u>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읍·면·동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u> ② <u>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자치회로부터 해촉 요구를 받는 경우 해촉 요구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해촉할 수 있다.</u> 1. <u>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u>

현행	개정안
<신설>	경우 2. 제18조제1항의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신설>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③ 제2항의 해촉 요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1.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 발의
<신설>	2.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자치회의 해촉 의결
<신설>	3.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해촉 요구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해촉 심의의 대상이 된 위원(주민자치회장 포함)은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제25조(감독) ① ----- -----

현행	개정안
분야 등에 관하여 <u>관련 사항을</u>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u>주민자치회가</u> <u>관련 사항</u> ----- ----- ----- -----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첨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84,000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세입(a)						
세출(b)	84,000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84,000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국 비	-	-	-	-	-	-
도 비						
시 비	84,000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 대상 : 24개 읍면동(위원 7명) · 사업기간 : 2022년 ~
 - 산출액(2022년) : 16,800천원
 - 산출근거 : 100,000원 × 7명 × 24개 읍면동 = 16,8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최영화(☎ 749-5453)
마을공동체팀장 이정화(☎ 749-560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1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4.(가족보육과-15690호 및 1569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29.(기획예산실-84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순천시 공고 제2022-1618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 -----.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1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근거조항 변경(안 제2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4.(가족보육과-15690호 및 1569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29.(기획예산실-84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순천시 공고 제2022-1618호)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9조----- ----- ---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1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설(안 제2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4.(가족보육과-1568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29.(기획예산실-84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순천시 공고 제2022-1628호)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u> <u>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u> <u>다음과 같이 정한다.</u> <u>행정운영동명 관할구역(법정동명)</u> <u>향동 삼거동 와룡동 옥천동</u> <u>영 동 행 동 금곡동</u> <u>매곡동 매곡동</u> <u>삼산동 석현동 가곡동 용당동</u> <u>조곡동 조곡동</u> <u>덕연동 생목동 덕암동 연향동</u> <u>풍덕동 풍덕동</u> <u>남제동 남정동 인제동</u> <u>저전동 저전동</u> <u>장천동 장천동</u> <u>중앙동 동외동 남내동 중앙동</u> <u>도사동 교량동 대룡동 흥내동</u> <u>오천동 덕월동 야흥동</u> <u>인월동 안풍동 대대동</u> <u>왕조1동 왕지동 조례동(일부)</u> <u>왕조2동 조례동(일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u> <u>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관</u> <u>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u> <u>로 한다.</u>
<신 설>	<u>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u> <u>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u> <u>같다.</u>

[별표]

행정운영동명	관할구역(법정동명)
향 동	삼거동 와룡동 옥천동 영동 행동 금곡동
매 곡 동	매곡동
삼 산 동	석현동 가곡동 용당동
조 곡 동	조곡동
덕 연 동	생목동 덕암동 연향동
풍 덕 동	풍덕동
남 제 동	남정동 인제동
저 전 동	저전동
장 천 동	장천동
중 앙 동	동외동 남내동 중앙동
도 사 동	교량동 대룡동 홍내동 오천동 덕월동 야홍동 인월동 안풍동 대대동
왕 조 1 동	왕지동 조례동(일부)
왕 조 2 동	조례동(일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1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일률적 결격 조항으로 규정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의 ‘피한정후견인’ 삭제

4. 일부개정안: 별첨

5. 관련법령: 해당없음

6.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9.(가족보육과-160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27.(기획예산실-820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29.(순천시 공고 제2022-1610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사기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u> 2. ~ 5. (생략)	제7조(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u> 2. ~ 5. (현행과 같음)

순천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제371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제정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 7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
-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있어 시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 1조 및 3조)
-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안 제 5조)
-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따른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규정(안 제7조)
-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 8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2022.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9.(가족보육과-1601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29.(기획예산실-84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순천시 공고 제2022-1615호)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특성과 순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순천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순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순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2. 재정수반요인

- 제3조(책 무) 순천시장은 순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 자치혁신과 과장 최영화(☎ 749-5453)
- 사회혁신팀장 김동영(☎ 749-3081)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1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일률적 결격 조항으로 규정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 위반에 해당 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피한정후견인’ 삭제

4. 일부개정안: 별첨

5. 관련법령: 해당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7. 15. ~ 8.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13.(가족보육과-1716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8.(기획예산실-890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7. 15.(순천시 공고 제2022-1710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피성년후견인 신고를 받은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센터 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센터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1. ~ 3. (생략) 4.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u>선고를 받은 자</u> 5. ~ 6. (생략) ② (생략)	제8조(센터 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u>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개정이유

-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 규정 사항 반영
- 2022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실비 지급에 따른 정산규정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실비 지급 정산규정 반영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현행)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7. 15. ~ 8.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13.(가족보육과-1714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3.(기획예산실-918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7. 15.(순천시 공고 제2022-172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u>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 2. ~ 8.(생략)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 ----- ----- -----, ----- -----. 1. <u>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 2. ~ 8.(현행과 같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2022. 4. 21. 시행)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대상사업 수익계약 매각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청

2. 주요내용

○ 용어개정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수익에 관한 포괄적 해석 방지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신설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2항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관련 필수 조례 위임사항
-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문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신설에 따른 조문 개정

- “법 제10조” ⇒ “법 제10조의2”

- 제12조(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3항 신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일부 개정 관련 필수 조례

위임사항

- 취득·처분 가액 : 10억원 이상
- 취득면적 :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 처분면적 :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
-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대부료 조정 감액율 개정
 - 대부료 조정 감액율 “100분의 70” ⇒ “100분의 1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 개정 관련
 - 전년도보다 과다하게(100분의 5 이상) 대부료가 상승 할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감액 조정 상한을 삭제하여 사용료·대부료 급등 시 부담 완화

○ 수의계약 매각 관련 규정 개정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9호 개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련 대상사업 통일성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조례 개정
 - 수의계약 매각 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을 “시장이나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 으로 개정
- ※ 투자일자리과-1474(2022. 1. 26.)호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청 사항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7. 15. ~ 8.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13.(가족보육과-1712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4.(기획예산실-918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7. 15.(순천시 공고 제2022-1725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을 “무상 사용허가 대상”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 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본문,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며, 같은 조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 중 “사용·수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수익하도록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
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수
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을 “시장이 투
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u>영 제52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② <u><신 설></u>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u>영 제52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② <u>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u> ② (생략) ③ <u><신 설></u>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법 제10조2</u>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u> <u>가. 취득의 경우: 10억원</u> <u>나. 처분의 경우: 10억원</u> <u>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u> <u>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u>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u>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u>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u>무상 사용허가 대상</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u>사용·수익허가의 제한</u>) ① (생략)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제19조(<u>사용허가의 제한</u>)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u>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u>)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제20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 허가</u>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	제19조의2(<u>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u>) ----- ----- ----- <u>사용허가</u> ----- -----. 1.~2. (현행과 같음) 3. ----- ----- ----- <u>사용허가</u> -----
제20조(<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보존 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의무	제20조(<u>사용허가</u>) ----- ---- <u>사용허가</u> ----- -----. 1.~4. (현행과 같음) 5. <u>사용허가</u> -----

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6. <u>사용허가</u> ----- ----- 7. (<u>현행과 같음</u>)
제21조(<u>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u>)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u>사용허가부의 비치</u>) ----- -----<u>사용허가부</u>----- -----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리수탁자가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u>사용허가</u>----- ----- -----. ② (<u>현행과 같음</u>) ③ ----- <u>사용허가</u>----- ----- ----- ----- ----- ----- -----. ④ ~ ⑥ (<u>현행과 같음</u>)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u>사용수익허가</u>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허가</u>----- -----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u>사용수익허가</u>(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수익하도록 허가</u>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 <u>사용 허가</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사용허가</u> ----- -----. ⑥ ----- ----- ----- ----- <u>사용허가</u> --- ----- -----. ⑦ ----- ----- ----- ----- ----- <u>사용허가</u> ----- ----- -----.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 제4항에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따라 공유채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u>사용·수익허가</u>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u>사용·수익허가</u>,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 ----- <u>사용허가</u> ----- -----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용허가</u>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u>사용·수익허가</u>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u>100분의 70</u>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u>사용허가</u> ----- ----- ----- ----- -----<u>100분의 100</u>-----.
제40조(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8. (생략) 9.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u>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	제40조(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8. (생략) 9. <u>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전략산업을</u> ----- ----- -----

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법률 제17893호)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시행, 대통령령 제32223호) 전부개정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의 번호 변경 반영(안 제1조)
 - (현행) 「지방자치법」 제134조 → (개정) 「지방자치법」 제150조
- 결산 검사위원회 선임인원 확대 및 위원의 수 제한(안 제2조)
 - (현행) 위원 수 5명, 의원은 위원 수 3분의 1 초과 금지
 - (개정) 위원 수 3명 이상 10명 이내, 의원은 위원 수 3분의 1 및 3명 초과 금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7. 15. ~ 8. 4.)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14.(가족보육과-1724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3.(기획예산실-918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7. 15.(순천시 공고 제2022-1726호)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한다.

제2조 중 “5명으로 하되,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0조 ----- ----- ----- ----- -----.
제2조(위원회 정수) 위원회의 정수는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제2조(위원회 정수) ----- ----- -----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3조
 - 위촉기간에 따라 위원에게 일비 지급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회계과	회 계 과 장	박홍파(☎ 749-5471)
	재정관리팀장	김희정(☎ 749-5671)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정 목적(농지의 취득과 이용의 효율적 관리)
- (안 제2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 ※ 농지법 제45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안 제3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농지 1필지 공유자 최대 7인 이하 제한)
- (안 제4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관외 경작자 외 6건)

4. 제정조례안 : 별첨

5. 관련법령 : 농지법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8.(가족보육과-1592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29.(기획예산실-835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순천시 공고 제2022-1614호)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로 한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순천시장, 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순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순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순천시 농지위원회 구성 및 명칭

권역(명칭)	관할지역	비고
순천시 농지위원회	동지역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농지위원회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승주읍, 월등면, 황전면 농지위원회	승주읍	
	월등면	
	황전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농지위원회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서면 농지위원회	해룡면	
	서면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읍면동)에 2022. 8월부터 농지 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 소요가 예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지급기준 상향(8% → 12%) 하였으며, 세무기준을 마련한후 기존 수수료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 추가 지급할 예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수당 및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농지위원회 운영(심사)를 통해 불법농지 투기 근절 등 농지제도 재정립을 통한 농지의 취득과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함.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소요 비용보다 이로인한 공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비용(a-b)	1,739,890	463,178	319,178	319,178	319,178	319,178
세입(a)	2,747,890	549,578	549,578	549,578	549,578	549,578
세출(b)	1,008,000	86,400	230,400	230,400	230,400	230,400

※ 세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최근 5년간 실제 지급한 평균 수수료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1,008,000	86,400	230,400	230,400	230,400	230,4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008,000	86,400	230,400	230,400	230,400	230,4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개년)

○ 사 업 비 : 1,008,000천원

○ 산출근거

- (2022년 예산) 86,400천원

· 심사수당 : 심사위원(90명) * 9회 * 심사수당(100,000원) = 81,000천원

· 운 영 비 : 분과회의(12개소) * 9회 * 50,000원 = 5,400천원

- (2023~2026년 년도별 예산) 230,400 × 4년 = 921,600천원

· 심사수당 : 심사위원(90명) * 24회 * 심사수당(100,000원) = 216,000천원

· 운 영 비 : 분과회의(12개소) * 24회 * 50,000원 = 14,4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 성 자

○ 시민복지국 허가민원과 과 장 장순모(☎749-5505)

개발팀장 김철성(☎749-582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 구성인원 변경 :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 위원추가 구성 : 교원자격자, 변호사, 의사, 경찰 각각 위촉

○ 아동보호 결정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 개 정 안 : 별첨

5.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29.(가족보육과-1600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23.(기획예산실-806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28.(순천시 공고 제2022-1595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구성)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8.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 ③ 시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아동복지심위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천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음식업·영양사·조리사협회 및 종교·자원봉사·급식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5. 순천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 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8.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 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
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
을 실시하고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3. 주요내용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과” 로 한다.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4. 개정조례안 : 별첨

5. 관련법령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20. ~ 7. 11.)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5. 20.(가족보육과-1338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10.(기획예산실-73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20.(투자일자리과-11246호)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과” 로 한다.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
한 법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illegible]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상위법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3.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4. 개정조례안 : 별첨

5. 관련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20. ~ 7. 11.)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5. 20.(가족보육과-133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10.(기획예산실-73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20.(투자일자리과-11245호)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근로자복지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u>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순천시 근로 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근로복지기 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의 <u>규정에 따라</u> ----- ----- ----- ----- ----- --.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
-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4. 개정조례안 : 별첨

5. 관련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5. 27.(가족보육과-1387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10.(기획예산실-73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투자일자리과-12059호)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심리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순천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순천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개정이유

-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이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복지를 위한 여행활동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조성과 관광저변 확대를 위해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취약계층” 정의 신설(안 제2조)
 -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관광취약계층 지원” 신설 (안 제16조)
 -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교육
 -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료제공” 지원대상자 개정(안 제17조)
 - 자료제공 지원대상자를 “제14조 및 제15조의 지원대상자에게”에서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지원대상자에게”로 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30. ~ 7. 2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15.(가족보육과-1505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10.(기획예산실-73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30.(순천시 공고 제2022-1560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10.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공) 제14조 및 제1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 협조한다. 1. ~ 2. (생략) 제17조 ~ 제34조(생략)	제17조(자료제공)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 ~ 제35조(현행 제17조 ~ 제34조와 같음)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 16조)

■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사업 관련

○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사업 추진

■ 대 상 : 순천시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장 애 인 : 지체(휠체어 이동자),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사 업 량

-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사업 시군별 배분인원(전남도)
(단위 : 명)

시군	계	장 애 인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인동행 1인	
순천시	1,400	150	150	1,100

- 장애인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도내 위주 당일 여행상품(150천원 이내)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150천원 이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735,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세입(a)	315,000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세출(b)	1,05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1,05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315,000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시 비	735,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2년~

○ 산 출 액 : 연 147,000천원

○ 산출근거

- 장애인대상 여행상품 운영비 지원 : 150,000원×150명 = 22,500천원
(도비 6,750, 시비15,750)
- 장애인 동행 1인 여행상품 운영비 지원 : 150,000원×150명 = 22,500천원
(도비 6,750, 시비15,750)
- 저소득층대상 여행상품 운영비 지원 : 150,000원×1,100명 = 165,000천원
(도비 49,500, 시비115,5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과 장 이찬성 (☎ 749-5500)
관광기획팀장 배은영 (☎ 749-5788)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3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심의주문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경쟁제한 조항 관련)
-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자치법규는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기술혁신 둔화 등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쟁 제한적인 사업활동 제한 문구 삭제
 - 제4조제2항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를 삭제

4. 개 정 안 : 별첨

5. 관련법령 : 해당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20. ~ 7. 1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15.(가족보육과-1505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10.(기획예산실-73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20.(순천시 공고 제2022-1550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u>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u>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3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2. 8. 10.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5조)

-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순천시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8조)

- 지역비전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기본계획 수립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및 공표

○ (안 제9조 ~ 제17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구성 : 위원장(부시장) 1명, 부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당연직 : 탄소중립 관련업무 국·소장
 - 위촉직 :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및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 제18조 ~ 제22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10. ~ 6.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9.(가족보육과-1465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7.(기획예산실-72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10.(순천시 공고 제2022-1498호)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는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정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순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탄소중립 관련업무 국·소장

2. 순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과거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1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순천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 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5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9조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생태환경과	과장	강승일(☎ 749-5493)
○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순영(☎ 749-5783)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